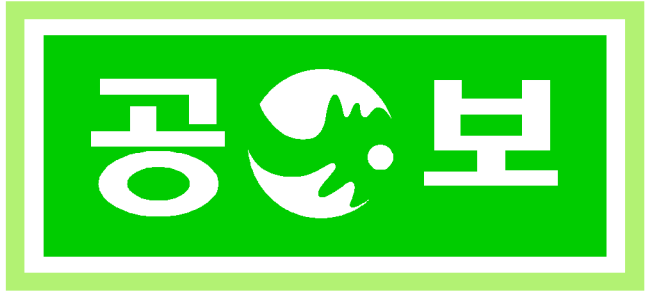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1149 호 2018. 11. 22. (목)

## 예 규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 2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05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08호[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09호[도로명주소 고시] .....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10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11호[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중속구간 도로명부여) 고시] .....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12호[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 1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small>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구청소식→알림마당→북구공보</small> </li> </ul>
--------	--

회 람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2018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제17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약사항 이행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을 “이행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평가 및 환류)”를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민
3.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제8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④ 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홍보실장, 서기는 공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0조(회의)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및 환류) ① 공약사항 평가는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서면평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2. 주요내용

- 정 의(제2조제5호 신설)
  - 협조부서 :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
- 이행계획의 변경(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정비)
  -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행계획을 변경
  -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제8조 신설)
  - 공약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
  -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
- 기 능(제9조 신설)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
  -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 회 의(제10조 신설)
  -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 평가방법 및 환류(제11조 신설)
  -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서면평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병행
  -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
- 수 당(제12조 신설)
  -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8 - 30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스카이주택 대표 박준홍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1블럭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 【붙임1】 참조

2018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명칭	울산송정지구 B1블럭 (호반메르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울산송정지구 B1블럭 (호반메르디움) 아파트 신축공사				변경없음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1블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1블럭				변경없음		
사업주체	(주)스카이주택 대표 박준홍				(주)스카이주택 대표 박준홍				변경없음		
사업주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길 2층 (역삼동,유니온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길 2층 (역삼동,유니온센터)				변경없음		
대지면적	32,840.00㎡				32,840.00㎡				변경없음		
건축면적	4,908.5338㎡				4,908.5338㎡				변경없음		
연년 적 진폐율/용적률	77,471.6013㎡ 14.95% / 169.9068%				77,495.0213㎡ 14.95% / 169.9068%				+23.42 (이하주차장면적) 변경없음		
층수/동수 /세대수	지상15~25층 / 주: 6개동, 부속: 16개동 / 498세대				지상15~25층 / 주: 6개동, 부속: 16개동 / 498세대				변경없음		
사업규모	형별	세대수	전용 년적	공용 년적	공급 년적	형별	세대수	전용 년적	공용 년적	공급 년적	비고
	A	82	75.9936	25.6165	101.6101	A	82	75.9936	25.6165	101.6101	변경없음
	A	326	84.9730	28.3942	113.3672	A	326	84.9730	28.3942	113.3672	변경없음
	B	45	84.9992	28.7797	113.7789	B	45	84.9992	28.7797	113.7789	변경없음
	C	45	84.9744	28.6942	113.6686	C	45	84.9744	28.6942	113.6686	변경없음
부대복리시설	계	498				계	498				변경없음
	구 분	합 계(㎡)			구 분	합 계(㎡)			비고		
	경미실	50.5549㎡			경미실	50.5549㎡			변경없음		
	관리사무실	197.4310㎡			관리사무실	197.4310㎡			변경없음		
	조정시설	12,742.93(38.80%)			조정시설	12,742.93(38.80%)			변경없음		
	주차장	636대			주차장	636대			변경없음		
	경로당	194.6077㎡			경로당	194.6077㎡			변경없음		
	어린이집	217.9789㎡			어린이집	217.9789㎡			변경없음		
	주민공동시설	102.5036㎡			주민공동시설	102.5036㎡			변경없음		
	주민운동시설	843.7342㎡(1개소)			주민운동시설	843.7342㎡(1개소)			변경없음		
	주민운동시설(외부)	196.1800㎡(1개소)			주민운동시설(외부)	196.1800㎡(1개소)			변경없음		
	어린이놀이터	720.7000㎡(2개소)			어린이놀이터	720.7000㎡(2개소)			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	447.2371㎡			근린생활시설	447.2371㎡			변경없음			
사업비	187,008,245천원				187,008,245천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6. 10. ~ 2018. 11.				2016. 10. ~ 2018. 12.				기간변경		
주요 변경내용	○ 104동, 105동, 106동 지상1층 필로티 부분 입면 일부 변경 및 마감재 추가 시공 ○ 지하층 설비면적 변경에 따른 전체 연면적 증가 및 기계/전기/통신/소방 설비 일부 변경 ○ 주택건설사업 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같이 변경함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8-308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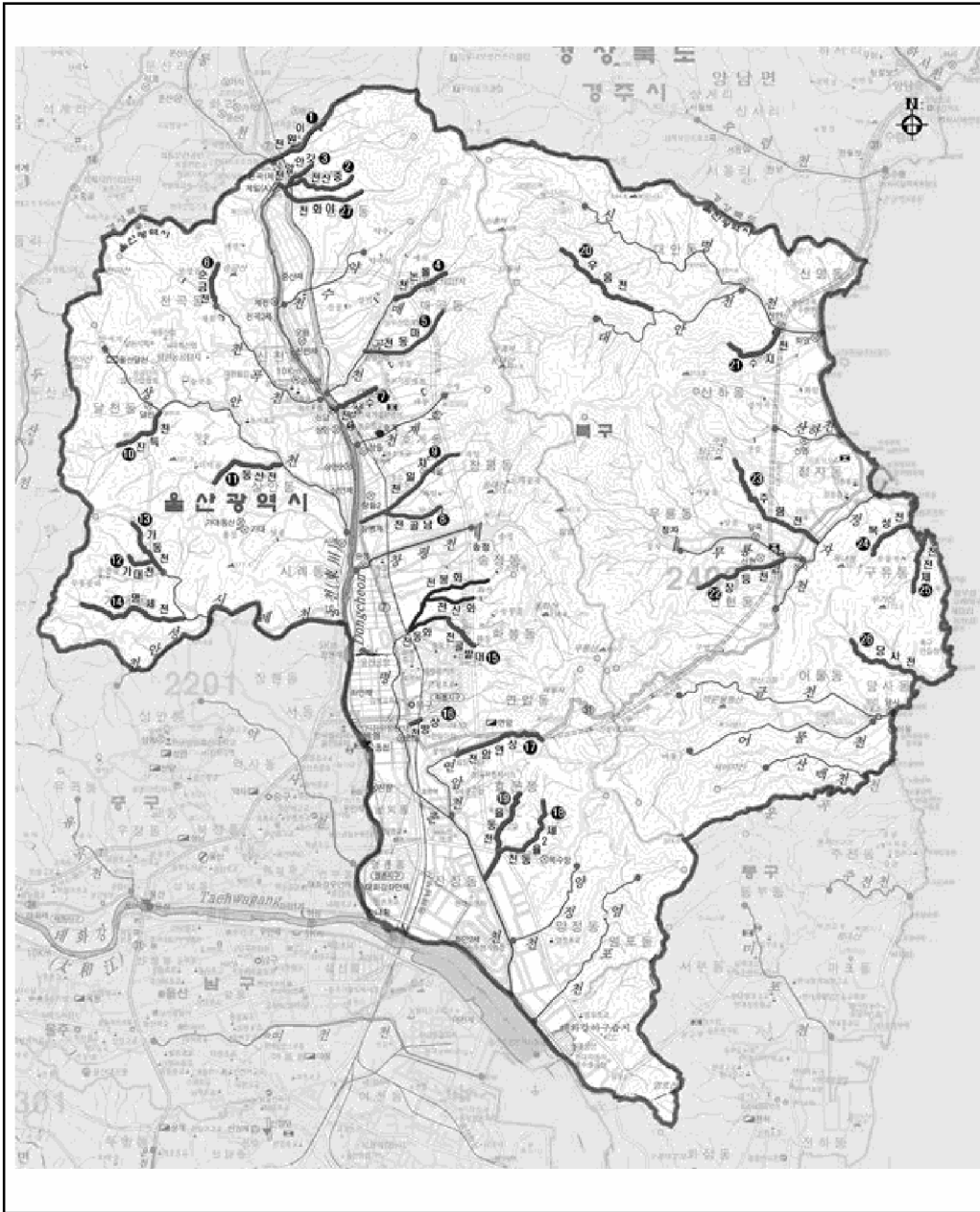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직인)

정비 기간	2018년 ~ 2027년(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후 10년)		
대상 소하천	총 3개소(화봉천, 화산천, 화봉천)		
총사업비	8,850,000천원	총길이	4,277 km
목적 및 정비 효과	재해예방	제방축제, 호안정비, 하상정비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 시설물(교량, 낙차, 보)개선으로 인한 통수능력 증대	
	생활환경개선	주민쉼터, 산책로, 식생호안 및 공원 조성	

열람서류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2. 소하천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종합도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309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2길 51-22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iuso.go.kr](http://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1.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대관동 165-1	울산광역시 북구 대관2길 51-22	2018-11-22	예진 지평인 대한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감동사리지7 22B 2L, 6L	울산광역시 북구 감동신해3로 36	2018-11-22	감동신해지구를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증지구 44B 10-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1길 25-1	2018-11-22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미이던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51B 1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5길 10	2018 11 22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44B 4L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14	2018-11-22	특별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	울산광역시 북구 화송로 67	2018-11-22	자연부락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310호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도로명주소 변경

종전주소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중산동 156	신기18길 22	2018.11.22	100m 이상 종속구간에 대한 새 도로명 부여
달천동 1-17	달천철장길 23	2018.11.2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1.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311호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종속구간 도로명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22.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 시 일 : 2018. 11. 22.

2. 고시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가. 도로구간 변경 : 박상진1로(1개 구간)

나. 도로명 변경(종속구간 도로명부여) : 신기18길, 달천철장길(2개 구간)

※ 세부사항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날부터 → 10일 이내
---------------------	------------------------------	--------------------------	-------------------------------	----------------------------------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심의결과 -변경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서면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5. 도로명부여도면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3,7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 번호	도로명	도로 위계	구분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유사 도로명	동일 도로명	중신선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종료지점						
1	박상진기로	로	변경전	송정동 786-7	송정동 17-5	1,633	30.5	20	1→164	박상진길	없음	노선도 참조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변경후	송정동 17-5	송정동 802-13	1,411	30.5	20	1→142					

□ 도로구간 변경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2 도로명 변경(중속구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면**

도로명 변경 조서

일련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 중심선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 위계	도로명	부여사유	유사 도로명	비고
1	중산동 53-3	중산동 53-2	노선도 참조	240	14	20	1-26	길	신기18길	중산지구 신기17길 인근 위치 연계 반영	신기1길 ~ 신기17길	기존 신전로 중속구간
2	천곡동 417-13	담천동 1-16	노선도 참조	312	15	20	1-32	길	담천권장길	담천중정에 인접하여 도로명 부여	담천로	기존 가재길 중속구간

도로명 변경 도면

신기18길	담천권장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 - 312호

##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고시일 : 2018. 11. 22.

2. 고시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가. 붙임 조서 및 도면과 같음

나.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폐지 조서 및 도면

도로구간 폐지 조서

위계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준 번호	중심선	폐지시유	행정구역	비고	비고
길	박상진길	송정동 728-1	송정동 26	1,443	5	20	1-144	노선도참조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구간 폐지	송정동	주소사용: 박상진의사 생가	박상진1로 ~ 박상진14로

도로구간 노선도

박상진길 폐지 구간

